

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등에 관한 법률</b> [ 제13250호, 2015.3.27., 일부개정]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</b> [법률 제13965호, 2016.2.3., 일부개정]</p>
<p><b>제2조(정의)</b>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8. (생략)</p> <p>9. “감리”란 문화재수리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 및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를 확인하고 문화재수리에 관하여 지도·감독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10. “문화재감리업”이란 이 법에 따른 감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11. (생략)</p> <p>12. “문화재감리원”이란 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 문화재감리업자에게 소속되어 문화재수리에 따른 감리를 업무로 하는 자를 말한다.</p> <p>13. ~ 17. (생략)</p>	<p><b>제2조(정의)</b> - - - - - .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“감리”란 문화재수리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.</p> <p>가. 일반감리: 문화재수리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 및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를 확인하고 문화재수리에 관하여 지도·감독하는 업무</p> <p>나. 책임감리: 일반감리와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업무</p> <p>10. “문화재감리업”이란 이 법에 따른 감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12. - - - - - 문화재감리업자 또는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 소속되어 문화재수리의 - - - - - .</p> <p>13. ~ 17.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4조(문화재수리등의 계획 수립)</b>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의 의견을 들어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<b>제4조(문화재수리등의 계획 수립)</b> ① - - - - -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- - - - - .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
<p><b>5조(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) ① ~ ④</b> (생략)</p> <p>⑤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<u>식물보호 또는 동산문화재 분야의 실측설계</u>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⑥ (생략)</p>	<p><b>제5조(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) ① ~ ④</b>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 - - - - . <u>경미한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나 식물보호 및 동산문화재 분야, 문화재청장이 직접 수행하는 보존처리를 위한</u> - - - - - .</p> <p>⑥ (현행과 같음)</p>
<p>&lt;신설&gt;</p>	<p><b>제6조의2(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)</b> 문화재수리등을 하는 자나 이해관계인은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
<p>&lt;신설&gt;</p>	<p><b>제7조의2(전통기술의 지원 등)</b>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기술의 보존이나 육성·보급, 재료·기법의 연구, 자재수급, 교육 등이 필요한 경우에 관련 법인이나 개인을 지원할 수 있다.</p>
<p><b>제9조(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)</b>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<b>제9조(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)</b> - - - - - 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제47조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(제9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)</p>
<p><b>제11조(문화재수리기능자) ①</b> 문화재수리기능자가 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이 시행하는 기능 종류별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 &lt;단서 신설&gt;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④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<u>실시</u>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&lt;후단 신설&gt;</p>	<p><b>제11조(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등) ①</b> - - - - - .</p> <p>- - - - - . 다만, 「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및 제32조에 따른 보유자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 분야의 보유자는 소정의 교육을 마친 때부터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 - - - - 실시 및 교육 등 - - - - - . [제목개정 2016.2.3]</p>

<p>&lt;신 설&gt;</p>	<p><b>제13조의2(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신고)</b> ①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술자(이하 “문화재수리기술자등”이라 한다)로서 경력·학력·자격 및 근무처 등(이하 “경력등”이라 한다)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.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·관리하여야 하며,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(이하 “경력증”이라 한다)를 발급하여야 한다. ③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은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신고에 필요한 자료,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·관리 및 경력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[본조신설 2016.2.3]</p>
<p>&lt;신 설&gt;</p>	<p><b>제14조의2(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)</b> ① 문화재청장은 발주자가 적절한 문화재수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문화재수리의 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문화재수리업자는 해마다 전년도 문화재수리 실적, 기술인력 보유현황, 재무상태,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(이하 “전년도 실적등”이라 한다)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③ 문화재수리업자는 전년도 실적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④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 방법, 전년도 실적등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[본조신설 2016.2.3]</p>
<p>&lt;신 설&gt;</p>	<p><b>제14조의3(문화재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)</b>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자본금, 경영실태, 문화재수리등 실적, 기술인력 보유현황,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자재·인력의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, 이를 필요로 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.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종합적·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자등, 발주자,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</p>

	<p>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  <u>④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및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[본조신설 2016.2.3]</u></p>
<p><b>15조(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)</b>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될 수 없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제49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(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라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)</p> <p>6. ~ 8. (생략)</p>	<p><b>제15조(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)</b> - - - - -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 - - - - <u>따라 취소된 자</u> 나 제1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- - - - -</p> <p>6. ~ 8. (현행과 같음)</p>
<p>&lt;신설&gt;</p>	<p><b>제25조의2(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)</b>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문화재수리 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.</p> <p>1. 문화재수리의 규모와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하수급인의 문화재수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p> <p>2. 하도급계약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</p> <p>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하수급인의 문화재수리 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.</p> <p>③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문화재수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수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</p> <p>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,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요구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[본조신설 2016.2.3]</p>
<p><b>제33조(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)</b> ①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수리 현장에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고, 이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</p>	<p><b>제33조(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)</b> ① 문화재수리업자(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- - - - -</p>

<p>알려야 한다. 다만, 발주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수리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36조(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작성)</b> ① 문화재수리업자는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완료하면 60일 이내에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된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. &lt;후단 신설&gt;</p> <p>③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수리 보고서는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시·도지정문화재(문화재자료를 포함한다)에 대한 문화재수리 보고서는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<b>제36조(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작성)</b> ① 문화재수리업자는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에 대하여 착수부터 완료까지의 전반을 기록화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문화재수리의 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② ----- . 이 경우 문화재수리기술자는 필요 시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, 요청을 받은 문화재실측설계업자는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.</p> <p>③ ----- 문화재청장 및 관할 -----</p> <p>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보고서에는 수리대상의 현황, 준공도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⑤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문화재수리 보고서 및 제38조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감리 보고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.</p>
<p><b>제37조(문화재수리 현장의 점검 등)</b> ① 문화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문화재수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<u>현장</u>을 점검할 수 있으며, 점검 결과 관계 법령을 위반</p>	<p><b>제37조(문화재수리 현장의 점검 등)</b>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현장이나 관</p>

<p>하거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자등,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감리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계 법령에 따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할 서류 등- - - - 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38조(감리의 시행 등)</b> ① 발주자는 그가 발주하는 문화재수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문화재감리업자로 하여금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문화재수리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 <p>③ 문화재감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감리를 할 때에는 그에게 소속된 문화재감리원을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.</p> <p>④ 문화재감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⑤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의 권한, 업무범위 및 배치, 감리의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<b>제38조(감리의 시행 등)</b> ① - - - - -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- - - - -</p> <p>②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시행하는 문화재수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에 대하여는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하여금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문화재수리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 <p>④ 문화재감리업자(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할 때에는 그에게 소속된 문화재감리원을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.</p> <p>⑤ 문화재감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⑥ 제5항에 따라 감리 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 및 관할 시·도지사에게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⑦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재감리원의 권한, 업무범위 및 배치,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의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시행일:2019.2.4] 제38조의 개정규정 중 책임감리에 관한 부분</p>
<p><b>제41조(감리의 제한)</b> 문화재수리업자와 문화재감리업자가 같은 자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문화재수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.</p>	<p><b>제41조(감리의 제한)</b> - - - - -</p>

<p>1. ~ 3. (생략) &lt;신설&gt;</p> <p>제4장 문화재수리협회</p>	<p>-----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직접 문화재수리를 하는 경우</p> <p>제4장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등</p>
<p>&lt;신설&gt;</p>	<p><b>제41조의2(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설립)</b> ① 전통건축 수리기술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종합적·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</p> <p>1. 전통건축의 부재( )와 재료 등의 수집·보존 및 조사·연구·전시 2. 전통재료의 수급관리, 보급확대 및 산업화 지원 3. 전통수리 기법의 조사·연구 및 전승 활성화 4. 문화재수리(문화재수리의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 5. 제38조제2항에 따른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6. 복원의 전통건축에 대한 조사·연구 및 보존 지원 7.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8.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에 필요한 사업</p> <p>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. ③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. ④ 국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[본조신설 2016.2.3][시행일:2019.2.4]제41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 중 책임감리에 관한 부분</p>
<p><b>44조(「민법」의 준용)</b> 문화재수리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<b>제44조(「민법」의 준용)</b> ① 재단-----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----- 재단법인-----.</p> <p>② 문화재수리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[전문개정 2016.2.3]</p>
<p><b>제45조(문화재수리 현황의 검사 등)</b> ① 시·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, 하</p>	<p><b>제45조(문화재수리 현황의 검사 등)</b> ① 문화재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 -----</p>

<p>도급의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재수리업자등에게 그 업무 및 문화재수리 현황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와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시·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문화재수리등의 발주자·문화재감리원 등 문화재수리등과 관련된 자에게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</p>	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문화재청장 또는 시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<p><b>46조(시정명령 등) ① (생략)</b></p> <p>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나 문화재감리원이 제53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.</p>	<p><b>제46조(시정명령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b>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 <u>전문교육</u> -----</p> <p>-----</p>
<p><b>제47조(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) ①</b>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2년</u>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·제2호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5. ~ 8.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9. (생략)</p>	<p><b>제47조(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) ①</b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3년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4의2.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</u></p> <p>5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8의2.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경우</u></p> <p>9. (현행과 같음)</p>



<p>&lt;신 설&gt;</p> <p>② ~ ④ (생 략)</p> <p>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문화재수리기술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, 그 사실을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1. 2. (생 략)</p> <p>3. 처분의 내용, 사유 및 근거</p>	<p>11. 제38조제7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감리를 수행한 경우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 - - - - 근거 [시행일:2019.2.4] 제47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 중 책임감리에 관한 부분</p>
<p><b>49조(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)</b> ① 시·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·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</p> <p>1. 2. (생 략)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3. ~ 8. (생 략)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9. ~ 13. (생 략)</p> <p>14. 제3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문화재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</p> <p>15.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</p>	<p><b>제49조(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)</b> ① 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 3년 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2의2.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</p> <p>3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8의2.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실측설계로 인하여 문화재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문화재수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</p> <p>9. ~ 13. (현행과 같음)</p> <p>14. 제38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- - - - -</p> <p>- - -</p> <p>15. 제38조제5항- - - - -</p>

<p>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16. ~ 18. (생략) ②·③ (생략) ④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재청장과 다른 시·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 &lt;후단 신설&gt;</p>	<p>----- 16. ~ 18.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통보하고,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- - . [시행일:2019.2.4]제49조제1항제14호·제15호의 개정규정 중 책임감리에 관한 부분</p>
<p><b>51조(수수료)</b>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. 1. ~ 4. (생략) &lt;신설&gt; 5.·6. (생략) &lt;신설&gt; &lt;신설&gt; &lt;신설&gt;</p>	<p><b>제51조(수수료) ①</b> ----- ----- 1. ~ 4. (현행과 같음) 4의2.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경력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5.·6. (현행과 같음) 7.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8.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 제56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수수료 수입은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수입으로 한다.</p>
<p><b>제53조(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보수교육) ①</b>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은 문화재수리등의 기술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범위와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③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을 고용하고 있는 문화재수리업자등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이 보수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, 이를 이유로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에게 불이익을</p>	<p><b>제53조(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전문교육) ①</b> ----- ----- 전문교육 ----- ② ----- 전문교육 ----- ----- 전문교육 ----- ----- ③ ----- 전문교육 -----</p>

<p>주어서는 아니 된다. &lt;후단 신설&gt;</p>	<p>----- ----- ----- [제목개정 2016.2.3] -----</p>
<p><b>56조(권한의 위임·위탁)</b>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<u>한국전통문화학교</u>의 장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</p> <p>② 문화재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 제8조 및 제11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등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<u>소요비용</u>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.</p> <p>&lt;신 설&gt; &lt;신 설&gt; &lt;신 설&gt; 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 &lt;신 설&gt;</p>	<p><b>제56조(권한의 위임·위탁)</b> ① ----- ----- <u>한국전통문화대학교</u> ----- ----- . -----</p> <p>② ----- <u>도지사는</u> ----- <u>다음 각 호의 업무</u>----- ----- . ----- <u>소요 비용</u>----- ----- . -----</p> <p>1. 제8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2. 제11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3. 제13조의2에 따른 신고의 접수와 기록의 유지·관리 및 경력증의 발급 4. 제14조의2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능력 평가 및 공시와 전년도 실적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 5. 제14조의3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에 관한 정보와 문화재수리 관련 정보의 관리·제공,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6. 제36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보고서 및 감리 보고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·운영 및 공개</p>
<p><b>제57조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)</b> 제56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</p>	<p><b>제57조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)</b> 재단의 임직원이나 제56조제2항에 따른 ----- ----- . -----</p>
<p><b>제59조(벌칙)</b>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화재감리업자로 하여금 <u>감리</u>를 하게 하지 아니한 발주자</p>	<p><b>제59조(벌칙)</b> ----- ----- . -----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 <u>일반감리</u> 또는 <u>책임감리</u>를 -----</p>

<p>&lt;신 설&gt;</p>	<p>7. 제41조를 위반하여 문화재수리와 감리를 함께 한 자[시행일:2019.2.4] 제59조제6호의 개정규정 중 책임감리에 관한 부분</p>
<p><b>62조(과태료)</b>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 <p>1.·2. (생 략)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3. ~ 9.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	<p><b>제62조(과태료)</b> ① 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2의2.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</p> <p>2의3.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년도 실적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</p> <p>3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